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향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0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곽향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원형, 이종환,
정준호, 최민규,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최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 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일반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5.07.28.)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역시 상위법령에 맞춘 완화 기준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4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해 경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50퍼센트 경감함(안 제 18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 기준)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100의 50으로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8조</u>(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 기준)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100의 50으로 경감한다.
<u>제18조</u> (생략)	<u>제19조</u>(현행 제18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한 보유차고 최저 면적기준 완화를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